



내부거래 Guide Book

2016



I . 내부거래의 기본개념의 이해

II .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
-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III . 부당지원 관련 규제

I. 내부거래의 기본개념의 이해

1. 내부거래란 ?

2. 내부거래 관련 법 개요

3. 관련 용어 설명

I. 내부거래의 기본개념의 이해

1. 내부거래란?

내부거래란 공정거래법상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함
거래의 형태는 자산거래, 상품거래, 용역거래 등이 모두 해당됨.

2. 내부거래와 관련된 법규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령과 관련이 있음
세법은 부당행위, 증여의제, 이전가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상법은 이사 등과의 거래 등을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 (공시 등)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관련규정	규제 대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일정요건의 계열회사와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하나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차별적 취급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내용을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공시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 **상법**

관련규정	규제대상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금지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주요 주주, 이사, 자회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
특별 배임죄	이사, 업무집행사원, 집행임원 등이 임무에 반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상장회사의 특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회사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등과 (1) 단일거래 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금융기관은 자산총액의 5%)이상 또는 (2) 특정인과 연간 거래 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금융기관은 자산 총액의 5%)이상인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와 사전 승인 필요
	상장회사는 (1)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이사 및 집행임원, (3)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위하여 신용공여 금지

◆ 세법

관련규정	규제대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법인세법)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을 재계산하여 과세
상증법(상 속세 및 증 여세법)상 증여의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이전가격 과세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해외거래에서 조작된 가격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3. 관련 용어 설명

(1) 기업집단 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해당회사와 그 회사가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지정일(매년 4월1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15일까지) 현재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1항)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참고>

2016년 4월 1일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 65개 임

(3) 특수관계인이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하 “동일인”)
- 동일인 관련자
 - ①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② 계열회사
 -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대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
의 임원 등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4) 대규모 내부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혹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

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를 거래
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혹은
50 억원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 두산은 50 억 이상 시 해당)

(5) 자산 거래란?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산은 자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

(6)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
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 함.

※ 지주회사 요건

- ① 자산총액 : 자산총액 1,000억 이상
- ② 지주비율 : 자회사 주식가액의 총액
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II.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1.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2.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II.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1.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제9조)

(1) 의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두산 및 계열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

(2) 금지의 예외(상호출자가 허용되는 경우)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3) 적용시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계열회사간 직접 상호출자
는 금지

다만,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일' 로 부터 1년간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4) 위반시 제재

(공정거래법 제16조, 17조, 66조)

-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0%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

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

(1) 의의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을 금지함

(2) 적용제외 또는 예외(시행령 제17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에 대한 예외 인정
- 국제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에 관한 보증,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보증에 대한 예외 인정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 시 채무보증 해소시한 유예 (유예기간 : 2년)

(3) 위반시 제재

(공정거래법 제16조, 17조, 66조)

- 당해 법 위반 채무 보증액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유의 사항

- . 금융기관(여신)이 매개되지 않는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 보증한 회사가 금융 및 보험회사
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계열회사
중 금융보험회사로부터 보증 받은
것은 제외
- . 국내 계열사간 보증만 채무보증에
해당,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 제외

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1) 기본사항

1) 공시의무 사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유가증권·자산 및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하여야 함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 시 이사회 의결로 인정 → (주)두산은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의결시 이사의 의결로 인정]

2) 공시기한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2)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두산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혹은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분기별로 50억원(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결 및 공시 필요)

1) 자금거래란?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거래란?

- ①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산거래란?

- ①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

4) 상품·용역거래란?

회사의 상품거래, 용역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 계산서 상 매출액 또는 영업 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

(3)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1)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①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② 50억원 이상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내부거래로 판단함

※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 자본총계 : 최근 주주총회에
서 승인된 재무제표 기준

2) 대규모내부거래 산정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이하
공시 규정- 제4조 2항)

①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시

a)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b)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 판단

② 상품·용역거래 시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기간 내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대규모내부거래 여부 판단기준

(공시규정 제4조 2항 1호)

부동산 임대차	<p>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 (= 보증금 X 이자율)</p> <p>- 관리비는 제외</p> <p>*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을 의미하며, 현재 (‘16년 3월)는 1.8%로 고시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p>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

(4) 주의 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범위

- 계열사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B와 자금의 차입·대여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 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

2) 공시사항의 변경관련

- 주요내용 변경 시 그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 거래목적 변경, 거래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대상에 제외),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 시 이사회 의결 후 공시

3)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공시 규정 제9조의 2)

일괄공시	<u>거래금액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u>
주요내용변경시공시	① 실거래금액이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 공시 ② 실거래금액이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 을 거친 후 공시
예측 못한 내부거래	분기 전에 예상하지 못한 내부거래가 분기 중에 공시 대상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 (분기 종료 후 X)
계약체결식공시	<u>계약 건별로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 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u> 단,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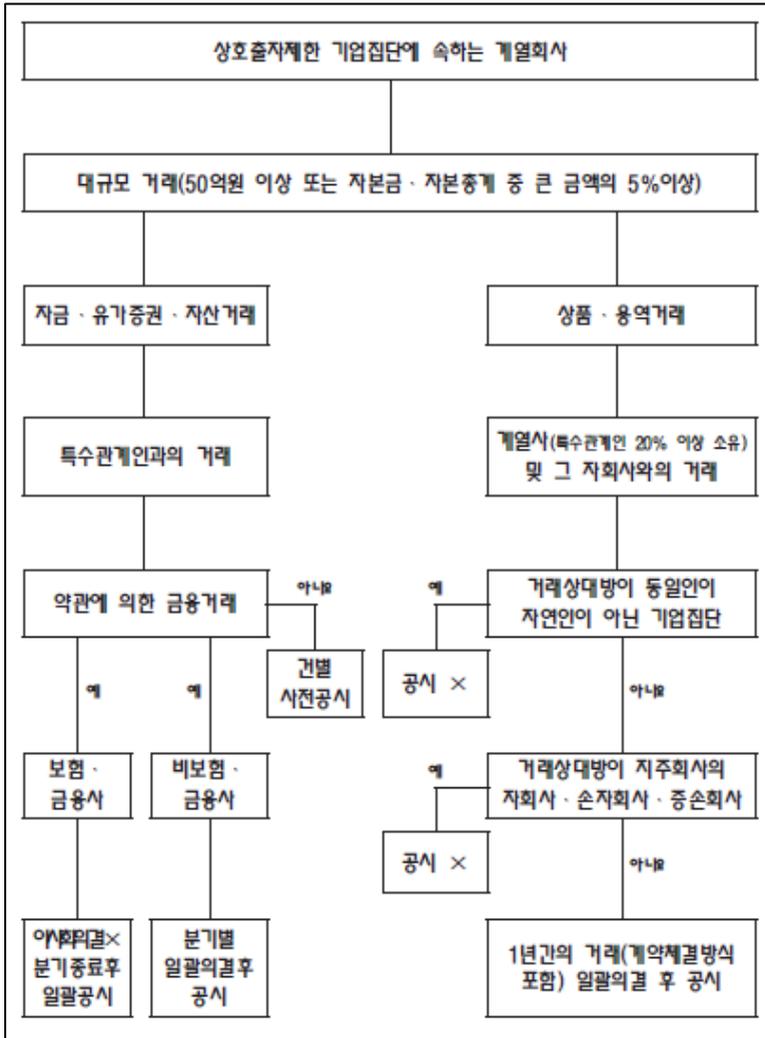
(5)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1) 다른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공시규정 제 4 조 5 항 1 호)

- 2)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3) 상품·금융거래에 수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 카드결제 등

◆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및 공시 요약



◆ 위반시 제재(과태료 부과 현황)

위반사항				기본금액(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기한내공시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내 공시했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내에 공시한 경우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가중조정 사유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 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거래금액별 과태료 기준금액]
 기본금액에 각 위반 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
20억원 이상	50

4.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4)

(1) 공시의무사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두산 및 두산의 계열회사)는
일반 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분기별·연 1 회 공시

(2) 공시기한

분기별 공시를 원칙(DART 이용)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기업의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연 1 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2·5·8·11 월 말일)에,
연 1 회 공시사항은 매년 5 월 31 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3) 주요 공시 항목

- ① 기업집단 일반현황
- ② 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 ③ 주식소유현황
- ④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⑤ 순환출자현황

◆ 항목별 공시 내용 및 공시빈도

공시항목(4)	공시내용(23)	빈도
일반현황(6)	1)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1)-1 영위업종 현황 2)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3)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4) 해외계열회사 현황 5)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2)	6)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7)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1회
주식소유현황 (2)	8) 소유지분현황 9)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단, 9)는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10)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11)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12)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13)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14)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15)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16)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17)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18)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19)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20)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21)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분기 (단, 14), 18)는 연회, 15)양식 중 비상장회사와 그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은 연1회)
순환출자현황 (2)	22)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23)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연1회 (단, 23)은 분기)

III. 부당지원 관련 규제

1. 일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2.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3. 위반시 행정조치
(공정거래법 제 24조)

III. 내부거래 관련 부당지원 관련 규제

내부거래 관련 부당지원에 관한 규제는

- 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관한 규제
-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로 크게 2가지로 구분 됨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규제 대상	사업자 일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원 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 목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금지 (부당지원행위금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 내용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일감몰아주기) ②통행세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의 제공 ③상당한 규모의 거래

1. 일반 부당지원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 정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 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 위법성 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a)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 객체(지원을 받는 회사)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력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 정상가격이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2) 상당성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의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

3) 부당성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주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쟁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함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이나 거래상의 합리성,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저리인수,
후순위 사채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등이 포함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

2) 자산지원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 수령,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등

☞ 유의사항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3) 상품 및 용역 지원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 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인쇄비/물품 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 수수료 과다지급행위, 계열사에게 무료 광고를 게재해 준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유의사항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 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 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 고려하여 결정

4) 통행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유의사항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1) 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 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 20% 이상인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은 제외함)

(2)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성

- ① 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부당한 이익발생
- ③ 부당한 이익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

2) 상당성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 ②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 매출액의 12% & 200억 이상

(3) 유형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헐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 등의 거래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법원판례 또는 지침 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2) 사업기회 제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예)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IT, 물류, 광고, 건설부대 서비스, 빌딩관리 등)

☞ “사업기회”란 (시행령 별표 1의3)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

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며(“밀접한 관계”)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웃소싱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물량몰아주기)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열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대주주가 지분을 갖는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임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란
(시행령 별표 1의3)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 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

- “상당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제공행위 당시의 제공 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 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 “상당한 규모” 판단기준

첫째,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둘째,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셋째,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4) 예외 조건(합리적 고려, 비교 없이 거래가능)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른 자와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 적용예시

- ①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사간에
상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경우
- ② 필수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③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 ④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 ⑤ 전문지식과 인력보유, 대규모 연속
사업의 일부,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
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 증대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른 자와 거래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정보유출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적용예시

- ① 필수시설 구축·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보유 관련
- ② 거래상 기밀, 개인정보 등
핵심 경영정보에 접근가능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유의사항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3. 위반시 행정 조치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24조)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부과 절차

- ① 지원금액 산정 및 과징금 산정
- ② 1차 조정 (행위요소)
- ③ 2차 조정 (행위자 요소)
- ④ 부과 과징금 결정

1) 지원금액 산정

- . 위반 거래금액 (정상적인 거래시 기대 급부와의 차액)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 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 . 산출이 어려운 경우 거래 또는 제공 규모(관련 매출액 등)의 100분의10을 위반금액으로 봄

2) 과징금 산정

-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금액 산정
 -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위반 행위를 3개 유형으로 구분
 - ①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 ② 중대한 위반 행위
 - ③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 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부과 기준율
매우 중대한위반 행위	80%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3) 1차 조정

-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평가하여 산정금액에 반영 (가산 조항)

①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준	적용
위반기간 1년 이내	산정기준 유지
위반기간 1~ 2년	10% 가산
위반기간 2~3년	20% 가산
3년 초과	50% 가산

②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

기준	적용
2회 이상 위반하고 산정점수 3점이상	20% 이내 가산
3회 이상 위반하고 산정점수 5점이상	40% 이내 가산
4회 이상 위반하고 산정점수 7점이상	50% 이내 가산

- ◆ 대상기간 : 최근 3년 이내
- 산정점수 : 기준표에 따른 점수
(기준표는 다음 페이지 참조)

4) 2차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가중 혹은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
(단,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 이내에서만 가중/감경 가능)

[관련 법규]

위반행위 유형	관련 조문	산정기준
일반부당 지원행위	제23조 1항 7호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에 증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행위	제23조의 2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증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일반 부당지원의 과징금 관련 점수산정 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지원 효과		0.4	①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①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①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②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약한
	지원 의도		0.2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전체 차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	지원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지원성 거래 규모		0.4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과징금 관련 점수 산정 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큰 경우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	행위의 의도,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작은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 에 대한 지분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 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